

## 18. 세인트 키츠 네비스 (Saint Kitts and Nevis)

### ●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(가입자/자영자/사용자)	5% / 10% / 5% (질병·출산급여 재원 병행)	5% / 10% / 5% (질병·출산급여 재원 병행)	-
연금수급 개시 연령	62세	62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500주	500주	-
노령연금 지급률	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30% + 500주 초과 50주 당 2% + 799주 초과 50주 당 1% 가산	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30% + 500주 초과 50주 당 2% + 799주 초과 50주 당 1% 가산	-
일시금	· 50주당 주 평균소득의 6배 · 50주 미만일 경우 가입자의 납부 금액	· 50주당 주 평균소득의 6배 · 50주 미만일 경우 가입자의 납부 금액	-

#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8년(적립기금)
- 현행법 : 1977년(사회보장, 1978년 시행) 1998년(사회부조)

#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
### 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 - 당연적용 : 근로자, 자영자, 견습생
  - 임의적용 : 2년 이상의 납부기간이 있는 이전 가입자
  - 적용제외 :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가사노동
  - 특별제도 : 공무원

- 사회부조 : 세인트 키츠 네비스에 거주하는 빈곤층

---

## 4      **재원조달**

---

- **가입자**

- 사회보험
  - 16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 가입소득의 5%(임의가입자 포함)
  - 16세 미만 또는 62세 초과시 보험료 부과 없음
  - 보험료 부과 최저소득 없음
 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최고소득 : EC\$6,500
  - 가입자의 보험료(임의가입자 제외)는 질병 및 출산 현금급여 재원이기도 함
- 사회부조 : 없음

- **자영자**

- 사회보험
  - 주단위 EC\$200 ~ EC\$1,500 사이의 소득 범주에 따라 월 소득의 10%
 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현금급여 재원이기도 함
- 사회부조 : 없음

- **사용자**

- 사회보험
  - 16세 이상 62세 이하인 근로자의 월 임금지급 총액의 5%
  - 16세 미만 또는 62세 초과 근로자 보험료 부과 없음
  - 보험료 부과 최저소득 없음
 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최고소득 : EC\$6,500
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현금급여 재원이기도 함
- 사회부조 : 없음

- **정부**

- 사회보험 : 없음; 단,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---

## 5      **급여종류별 수급요건**

---

- **노령급여**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보험료 납부기간 150주 이상을 포함하여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이 500주 이상인

62세 도달자

- 가입자가 장애급여, 질병급여, 출산급여, 산재급여를 수급한 가입대상 기간으로 각 완성된 주는 보험료 납부로 인정됨
- 노령연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  -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이 500주 미만인 62세 도달자
  - 가입자가 장애급여, 질병급여, 출산급여, 산재급여를 수급한 가입대상 기간으로 각 완성된 주는 보험료 납부로 인정됨
  - 노령일시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 -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노령연금 또는 노령일시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세 도달자
  - 노령사회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이상인 자로 장애가 26주 이상 지속되었고 영구적인 것으로 판정된 16세 ~ 61세인 자
  - 사회보장의료위원회가 최소 3년마다 또는 의사 권고에 따라 언제든지 장애정도 판정
  - 장애연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미만이며 근로 불능이고 소득 또는 다른 지원이 없는 자로 장애가 26주 이상 지속되고 영구적일 것으로 판정된 16세 ~ 61세인 자
  - 사회보장의료위원회가 최소 3년마다 또는 의사 권고에 따라 언제든지 장애정도 판정
  - 장애사회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 당시,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이상이거나, 노령/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지급
  - 수급가능 유족 : 유족배우자, 16세(정규 학생인 경우 18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 자녀, 피부양 부모
  - 유족배우자연금은 재혼 및 동거 시 중단됨
  - 유족연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의 사망 당시 노령/장애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 - 가입자가 장애급여, 질병급여, 출산급여, 산재급여를 수급한 가입대상 기간으로 각 완성된 주는 보험료 납부로 인정됨
  - 수급가능 유족 : 사망자와의 혼인 또는 동거기간이 3년 이상인 45세 이상 유족배우자, 16세(정규 학생인 경우 18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 자녀

- 유족일시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장제비(사회보험)
  - 사망 당시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26주 이상인 경우 지급
  - 장제비는 해외 지급 가능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30%에 50주를 초과하는(최대 799주까지)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 매 50주 당 2%(799주를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매 50주 당 1%)씩 가산한 금액을 52로 나누어 주단위 연금액 산정
  - 연 평균소득은 최종 보험료 납부기간 15년 중 최고 3년의 소득을 근거로 산정됨
  - 월 최저 노령연금 : EC\$430
  - 월 최고 노령연금 : 가입자 월 소득의 60% 또는 EC\$3,900 중 적은 금액
  - 지급 주기 : 노령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의 납부기간이 50주 이상인 경우,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 매 50주 당 가입자 주 평균소득의 6배씩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50주 미만일 경우 가입자의 납부 금액이 반환됨
  - 주 평균소득은 최종 보험료 납부기간 15년 중 최고 3년의 소득을 근거로 산정됨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월 EC\$255 지급

##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30%에 50주를 초과하는(최대 799주)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 매 50주 당 2%(799주를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매 50주 당 1%)씩 가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월단위 연금액 산정
  - 연 평균소득은 최종 보험료 납부기간 15년 중 최고 3년의 소득을 근거로 산정됨
  - 급여는 장애가 26주 이상 지속된 후 또는 26주 동안 질병급여가 지급된 후 지급
  - 월 최저 장애연금 : EC\$430
  - 월 최대 장애연금 : 가입자 월 소득의 60% 또는 EC\$3,900 중 적은 금액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월 EC\$255 지급

#### ○ 유족급여

- 유족배우자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/장애연금의 50%를 1년간 지급
  - 유족배우자가 45세 이상이고 사망자와의 혼인 또는 동거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인 경우 평생 지급

- 월 최저 유족배우자연금 : EC\$215
- 월 최대 유족배우자연금 : EC\$1,950
- 고아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/장애연금의 16.7%를 고아 각각에게 지급. 고아가 장애가 있는 경우 33% 지급
  - 월 최저 고아연금 : EC\$206.40
  - 월 최대 고아연금 : EC\$650
- 피부양부모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/장애연금의 최대 16.7%까지 지급
  - 피부양부모가 실업이고 62세 미만이면 1년간 지급 ; 장애이거나 62세 이상이고 다른 수당을 받은 게 없으면 평생 지급
  - 월 최저 피부양부모연금 : EC\$103.2
  - 월 최대 피부양부모연금 : EC\$650
  - 최대 합산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/장애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
  - 유족배우자 일시금 : 사망자가 적어도 50주 이상 보험료 납부를 했다면,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일시금의 50%를 유족배우자나 유족동거인에게 지급
  - 고아일시금 : 사망자가 적어도 50주 이상 보험료 납부를 했다면,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일시금의 16.7%를 수급자격이 있는 각 고아에게 지급 ; 장애가 있는 고아의 경우 33.3% 지급
  - 최대 합산 유족일시금은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일시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 -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50주 미만인 경우, 사망자의 납부 보험료가 일시 반환됨
- 장제비(사회보험)
  -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사망 시 최대 EC\$2,500까지 일시금 지급 ; 피부양 자녀 사망 시 최대 EC\$1,600까지 지급
  - 장제비는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됨
  - 장례비용이 장제비보다 적을 경우 그 적은 금액만 지급됨

## 7

### 관리운영기관

- 네비스·노동·사회보장·기독교부(Ministry of Nevis Affairs, Labour, Social Security, and Ecclesiastical Affairs)
  -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
- 사회보장위원회(Social Security Board)
  - <http://www.socialsecurity.kn>
  -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- **사회발전부조위원회(Social Development Assistance Board)**
  - 사회부조제도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